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590호

나. 발 의 자 : 김형재 의원(찬성자 28명)

다. 제출일자 : 2025년 3월 31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 서울시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위촉한 52명의 홍보대사 중에는 최근 서울시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연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한 홍보성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보대사의 연임은 최대 2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안 제3조 제3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홍보대사가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고,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여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위촉) ①·② (생략)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조(위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되, 2차례 --.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2) 홍보대사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21명('25.4. 기준)의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현황(2025.4.) >

연번	성명	전문분야	최초위촉	연임여부(횟수)
1	김소영	아나운서	2023년	연임(1)
2	김태균	방송인	2017년	연임(3)
3	김현정	한국화가	2018년	연임(3)
4	다니엘 린데만	방송인	2017년	연임(3)
5	박지호	기획가	2018년	연임(3)
6	박진희	배우	2018년	연임(3)
7	선	가수	2023년	연임(1)
8	송지오	패션디자이너	2018년	연임(3)
9	슈카	경제전문 유튜버	2023년	연임(1)
10	알베르토 몬디	방송인	2017년	연임(3)
11	양태오	인테리어 디자이너	2018년	연임(3)
12	오상진	아나운서	2023년	연임(1)
13	온오빠	틱톡커	2023년	연임(1)
14	유현준	건축가	2018년	연임(3)
15	이영지	가수	2021년	연임(1)
16	장윤주	모델	2017년	연임(3)
17	정샘물	메이크업 아티스트	2018년	연임(3)
18	제이슨	방송인	2019년	연임(2)
19	조수미	음악가	2019년	연임(2)
20	최불암	배우	1998년	연임(13)
21	홍현희	방송인	2019년	연임(2)

※ 동 조례 제정('10.4.) 이전 위촉된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는 2년 임기 기준으로 산출

-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나,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3)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동 개정안은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 일반적으로 조례가 직위에 대한 임기 및 연임 제한을 두는 이유는 특정 개인이 장기간 직위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인물을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함임.
- 특히 홍보대사의 경우, 트렌드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여야 하는 분야의 특성상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25년 4월 활동 홍보대사 21명 중 초임인 홍보대사가 없고 15명(71.4%)이 2번 이상의 연임을 한 점, 2024년 이후 신규 홍보대사 위촉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홍보대사 구성은 상당한 경직성을 띠고 있다고 보임.
- 또한, 두 차례의 연임 제한으로 인해 6년을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시정홍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동 개정안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임.

-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의 현직 홍보대사가 2회 이상 연임한 상황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이 일시에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그러나, 동 개정안이 탁월한 업적이 있는 홍보대사에 대하여 연임 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고, 2024년 홍보대사의 전체 인원 29명 중 활동자 수는 14명, 활동 횟수는 29회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큰 규모의 홍보대사 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오히려, 서울시는 홍보대사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활동 관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고 향후 신규 홍보대사 모집 및 조직 운영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홍민지(2180-8118)
------	----------------	-------	----------------

의안번호
2590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형재(1인발의)	2025.03.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계속 연임되고 있는 홍보대사의 임기 관련하여 최대 2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추진경과	○ '25. 03.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제328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상임위 김형재 의원 지적사항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홍보대사 연임 제한 횟수 규정 필요		
대응방안	○ 홍보대사 연임 제한 횟수 규정		
상 임 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팀장 김지원(☎2133-6438)	담당 이지나(☎2133-6417)